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8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 임광현 · 김정호 · 정진욱

김남희 · 최기상 · 김태년

오기형 · 정태호 · 박민규

박홍배 · 강준현 · 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原)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

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에게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이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안 제 164조의6 신설).
- 나. 금융회사등은 주식 및 출자지분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1항).
- 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2항).
- 라. 금융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과 집합투자증권의 환 대·양도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3항).
- 마.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내역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6(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 ① 거주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이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익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이익등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탁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 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그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 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및 출자지분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 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

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득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 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 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
-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

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내역"이라 한다)를 거래 또는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6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및 출자지분등
- 2. 제16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
- 3. 제164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 4. 제16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 5. 제164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 ②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유내역"이라 한다)를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이라 한다)를 투자 또는 환매·양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환매·양도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④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거래내역: 해당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12월
 31일
- 2. 보유내역: 제2항에 따라 보유내역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 12 월 31일
- 3.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 해당 투자 또는 환매·양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12월 31일
- ⑤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
례) 제16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에 관한 적용 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4조의6(금융투자상품으로부
	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
	① 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이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익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이익등의 지
	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
	을 위탁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
	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
	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
	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
	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
	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 분(이하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 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 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 생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기례내역 등 제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

위로 발생하는 이익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 자기구의 해지·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 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 하는 이익
-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 용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보유 내역 제출 및 보 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 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내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 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 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3.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 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 (이하 이 조에서 "거래내역"이 라 한다)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 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4조의6제1항제1호에 따 른 주식 및 출자지분등
- 2. 제16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
- 3. 제164조의6제1항제3호에 따 른 투자계약증권
- 4. 제16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 5. 제164조의6제1항제5호에 따 른 파생상품
- ②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유내역"이라한다)를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조 에서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

등"이라 한다)를 투자 또는 환 매·양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 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 자증권에 대한 환매·양도내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
- ④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 자기구 투자내역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의 따른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거래내역: 해당 거래 또는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연도 12월 31일
- 2. 보유내역: 제2항에 따라 보 유내역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연도 12월 31일
- 3.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 해당 투자 또는 환매·양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12

월 31일

- ⑤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 투 자내역등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